



경찰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29.(월) 조간 온라인·방송 2025. 12. 28.(일) 09:00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고’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콜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한편, 기준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를 발급하여, 도로 위 국민 안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관련 민원이 연말에 집중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준 ‘연 단위(1. 1.~12. 31.)’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개편을 통해 학원 중심의 도로 연수 교육 체계를 수요자인 교육생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편의와 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실질적인 국민 체감형 규제 혁신을 완성하였다.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도로교통법 개정 포스터

담당 부서	생활안전교통국 교통기획과	책임자	과장	조 우 종	(02-3150-2501)
		담당자	계장	이 종 학	(02-3150-2151)
			계장	김 동 주	(02-3150-2153)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도로교통법령, 2026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약물운전 처벌 강화

(2026. 4. 2. 시행)

기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2 상습 음주운전 차단

(2026. 10. 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 장치 제도 시행(2024. 10. 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 10. 24.)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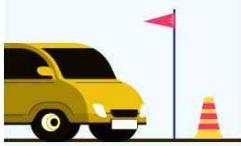
3 면허 갱신 기간 변경

(2026. 1. 1. 시행)

기준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 편의 증진



4 찾아가는 도로 연수

(2025. 12. 2. 시행)

기준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5 실제 운전 경력 검증

(2026. 3. 19. 시행)

기준 장통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

개정 운전경력 입증 및 적성검사 후 제2종→제1종 취득 가능

7년 무사고시 ‘운전 경력’ 확인 후 ‘실제 운전 자’에게 1종 면허부여